

『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0월 12일

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신 영 근

나. 제안이유

-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, 시설물대관 신청기한 완화 및 시설물 사용료 반환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강당사용허가신청서 및 강당사용허가변경·취소신청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2조제2항)

- 강당사용허가신청서 :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⇒ 5일전까지 제출
- 강당사용허가변경·취소신청서 :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⇒ 3일 이전까지 제출
- 강당사용료 반환규정 신설(안 제6조제2항)
-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 신설(안 제16조 내지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의거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 이용자 편의도모와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.
- 주요 개정내용은
 - 도서관 시설사용에 따른 강당사용 허가신청서 제출 기한을 사용예정일 「10일전까지」를 「5일전까지」로 하고, 강당 사용허가변경·취소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예정일 「5일 이전까지」를 「3일 이전까지」로 조정하였으며
 -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을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 운영해 온 것을 09:00부터 18:00으로 통일하였으며,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 하였음
 - 또한 운영위원회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, 정기회를 매년 3월말에 개최토록 규정하였음

○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2개 조항입니다

- 먼저 안 제18조제2항중 정기회를 「매년 3월말」에 개최토록 규정된 내용임

- 그 이유는 안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, 도서관자료의 구성 및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연말이전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

1/4분기 마지막 달인 「매년 3월말」에 정기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 지연 등으로 각종 현안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 제18조의 매년 3월말로 규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- 다음은 부칙에 단서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.

- 그 이유는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 위촉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잔여 임기보장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 제2항(경과조치)를 신설하고

- 그 내용은 부칙 「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」를 부칙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(경과조치)는 「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」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